

# 2026년 농산업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참가기업 모집 공고

## □ 모집개요

- 개 요 : 농산업 단체참가(한국관) 해외박람회 참가기업 직접비용 지원
- 참가 박람회

주최국	도시	명 칭	기 간	모집 규모	품목별 규모(개사)		
					①	②	③
일본	니가타	AGRI EXPO NIIGATA	02.25.~02.27.	14개사	6	6	2
중국	상하이	CAC	03.17.~03.19.	20개사	-	20	-
베트남	호치민	Horti & Agri Vietnam	05.20.~05.22.	10개사	4	5	1
호주	구네다	AgQuip	8월 중순 예정	10개사	6	3	1
사우디	리야드	AGRICULTURE SAUDI	10.19.~10.22.	10개사	4	4	2
튀르키예	안탈리아	GROWTECH ANTALYA	11월 중순 예정	20개사	8	10	2

- 각 박람회의 특성,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선정 규모를 산정, 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① : 농기계, 시설자재 / ② : 비료, 친환경농자재, 농약 / ③ : 종자, 사료, 동물용의약품

○ 지원대상 : 농기자재 8개 품목

- (모집규모) 수출(예정)기업 84개사 내외\*

\* 모집 규모는 기업 수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

- (지원자격) 농기자재 8개\* 품목, 지원제외대상 **【별첨1】**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\* 농기계, 비료, 농약, 종자, 시설자재, 친환경농자재, 사료, 동물용의약품

- 지원내용 :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(부스 및 비품임차비, 장치공사비 등)
  - (중견·중소기업) 국고 70%, 자부담 참가비 30%, (대기업) 국고 50%, 자부담 참가비 50%

○ 제한사항

- 동시 지원·참가 가능하나 다양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통해 **기업당 최대 3회 박람회 참가 원칙**
- 단, 모집 규모 미달 시에는 추가 참가 허용
- 일본 니가타 박람회는 개최 일정상 조기 선정에 따라 선정기업은 전체 3회 중 **1회를 사용**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이후 최대 2개 박람회 참가 가능
- 정부,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박람회에 중복 지원 불가

○ 추진일정

- 일본 니가타 박람회 개최 일정(2월 말)을 고려하여 별도 선정 및 알림

명 칭	모집 기간	결과 통보	비 고
AGRI EXPO NIIGATA	2025. 11. 10.(월) ~ 11. 16.(일)	11. 18.(화)	
CAC	2025. 11. 17.(월) ~ 2026. 1. 16.(금)	2026. 1. 30.(금)	
Horti & Agri Vietnam			
AgQuip			
AGRICULTURE SAUDI			
GROWTECH ANTALYA			

\*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지원 세부내용

### ○ 지원범위

지원 사항	지 원 내 용	지 원 비 율	
박람회 지원 범위	<b>① 부스·비품 임차비, 장치비, 온라인 등록·홍보 등 박람회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</b> * 장치 기본제공 범위 및 내역 - 조명, 기본벽체, 바닥카펫, 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<참고> 부스 배정 기준 * 참가기업당 1부스 원칙(12㎡이하) - 예외 적용 : 최대 5부스까지 배정 가능 ( 농기계 등 부피가 큰 품목을 전시하는 경우, 기타 농식품부,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 <b>** 기본제공 면적 외 추가면적 필요시 신청서에 별도 기재</b>	(중견·중소기업) 국고 70%, 자부담 30% (대기업) 국고 50%, 자부담 50%	
	<b>② 홍보비</b> - 한국관 홍보 디렉토리 제작비용 등		
	<b>③ 전시품 관련 운송·통관비</b> * 해상 운송 원칙, 부스당 1CBM 한도 ** 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(公社와 사전 협의 필요) *** 반송 및 통관 비용은 개별 업체가 부담		편도 100%
	<b>④ 현지어 통역비</b> *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현지어 통역 제공		기업당 1인
	<b>⑤ 네트워킹 만찬</b> * 참가기업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 제공		석식 1회 제공
	<b>⑥ 부스별 바이어 매칭 상담 지원</b> * 바이어 사전 매칭, 현장 상담 진행		
행정지원	<b>⑦ 부스임차,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 측 서류 제출 등</b> <b>⑧ 공식 협력사 선정 예정(장치사, 운송사, 여행사)</b> * 참가기업은 공식 선정 장치사,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		

### ○ 참가기업 부담

- 출장자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
- 전시물품 반송 비용,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(부스 당 1CBM 지원기준)
- 지원 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 비용
- 기타 비자발급, 격리비용(필요시), 현지 이동비용 등

## □ 참가기업 자부담

명 칭	자부담 금액	비 고
AGRI EXPO NIIGATA	약 280만원 내외	
CAC	약 200만원 내외	
Horti & Agri Vietnam	약 350만원 내외	
AgQuip	미 정	
AGRICULTURE SAUDI	약 400만원 내외	
GROWTECH ANTALYA	약 270만원 내외	

\* 1부스 9sqm 기준, 임차비, 장치비 등 30% 산정 / 자부담 확정 금액은 추후 통보

## □ 신청 및 발표

- 신청기간 : (일 본) 2025. 11. 10.(월) ~ 2025. 11. 16.(일) 18:00 까지  
(기 타) 2025. 11. 17.(월) ~ 2026. 1. 16.(금) 18:00 까지
- 신청방법 :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(<http://www.agroex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신청  
(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→ 공고 및 참가 신청 → 해외 종합박람회 → 신청하기)
- 신청서류 :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등록

구분	내 용
필요 서류	<p>※ 참가 신청, 전시 품목 상세 내용 등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입력</p> <p>※ 아래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첨부</p> <p>① 사업계획서 1부</p> <p>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</p> <p>③ 참가 서약서 1부</p> <p>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/p> <p>⑤ 온라인 -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</p> <p>* 최근 3개년('22~'24)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</p> <p>** 동의 방법 [별첨]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(Tmy Data)] 참고</p> <p>※ 정보제공 미동의 시 계량점수 해당 평가항목(수출잠재력, 수출액) 0점 처리</p> <p>⑥ 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(선택)</p>

○ 심사항목 : **【별첨2】** 참조 / **일본 니가타 박람회는 계량평가(가산점포함)만 진행**

○ 선정결과 : (일 본) 2025. 11. 18.(화), (기 타) 2026. 1. 30.(금)

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 확인(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 → 지원내역)

## □ 유의사항

- ①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,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
- ②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③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,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
- ④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- ⑤ 참가비는 사업운영지침의 **【별첨3】** 에 따라 청구·징수
- ⑥ 참가비납부는 추후 산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
- ⑦ 기타 벌칙 및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**【별첨4】** 참조

## □ 문의처

-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(061-338-5748, smart\_ag@ekr.or.kr)

## 【별첨 1】 지원제외대상

- ① 농기자재 이외 품목(공산품 등) 해당 기업
- ②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③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④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
-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⑥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
-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,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
- ⑦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/기업
- ⑧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⑨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## 【별첨 2】 해외박람회 참가기업 선정기준 및 배점

구분	항목	평가내용	배점	세부평가내용					
계량 (45)	제품 경쟁력	- 국내외 제품 인증·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 (PCT 출원, CE인증 등)	10	개당 5점(최대 10점)					
	수출 성장기업	- 전년(2024)대비 2025년 수출액 증가율 * '25년 신규 수출 : 9점 ** '24년, '25년 모두 수출실적 0 : 6점 ※ 일본 박람회의 경우, 10월 기준으로 수출실적으로 산정	15	50% 이상	10~50% 미만	0~10% 미만	0% 미만		
				15	12	9	6		
	수출실적	- 전년도 수출실적 ※ 일본 박람회의 경우, 10월 기준으로 수출실적으로 산정	10	20만불 이상	10~20만불 미만	5~10만불 미만	5만불 미만		
10				8	6	4			
수출 준비도	-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보유 여부	10	2개 이상 10		1개 5		없음 0		
비계량 (50)	수출역량	- 제품 특성 및 경쟁력, 비계량 수출성과(MOU 등)	5	A (5)	B (4)	C (3)	D (2)	E (1)	
	사업계획	- 사업 추진 배경, 계획 및 목표 등	30	A (30)	B (27)	C (24)	D (21)	E (18)	
	발전가능성	- 사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발전 계획	15	A (15)	B (13.5)	C (12)	D (10.5)	E (9)	
가산점 (5)	① (혁신) 벤처기업(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 개시일 7년 미만),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(NET) 인증기업	3	※ 1.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, 항목 내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2.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, 허위정보 및 성과 기재 시 0점 처리 * 가점서류 사본 제출 :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(NET) 인증서, 현지 실증(테스트베드) 완료 증빙(현지 공신력 있는 실증 관련 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 실증 결과보고서 등), 벤처기업 인증서 등						
	② (사업성과 제고) 현지 실증(테스트베드)지원 사업 수행 완료 기업('23~'25, 3개년 인정), 2025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, 2025년 K-Food+ 수출탑 수상기업 ※ 일본 박람회의 경우, 2025년 수상기업 선정 전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수출탑 수상기업 가점 없음	5							

### <참고>

- (1) 증빙서류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 불인정
- (2) 계량 평가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에 조회되는 실적만 반영함  
(※Tmydata 정보 제공 미동시 수출성장기업 및 수출실적 항목 평가 0점 처리)
- (3) 평가방법 : (계량) 제출서류 기반 운영기관 내부평가, (비계량) 수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외부평가
- (4)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인증 외 타분야 (기업경영 등) 인증 불인정  
(ex.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미적용)
- (5) 수출 준비도 증빙자료 유의사항
  - \*외국어 홈페이지 증빙시 해당 **홈페이지 화면 캡처본** 첨부
  - \*카탈로그 증빙시 pdf 파일 10MB 이하로 업로드(용량 초과시 일부분 첨부 허용)
  - \*외국어 카탈로그, 브로슈어 홍보물 및 외국어 홈페이지 등 점수 중복 가산하지 않음
  - ex) 외국어 카탈로그 + 외국어 홈페이지 = 10점  
외국어 카탈로그 + 외국어 브로슈어 = 5점  
영문 홈페이지 + 중문 홈페이지 = 5점

### 【별첨 3】 기업 참가비 산정 및 처리요령

- “사업비 지원비목”의  $[(① + ② + ⑥) * 0.3]$ 을 산출하여 기업참가비 산정하며, 적용 환율은 참가비 납부 안내일 기준으로 주 첫날(월요일) 환율 적용
- 전시물품 반송 비용

#### \* 사업비 집행 비목

비 목	비 고
① 임차료	업체당 12㎡ 이하, 1개 부스 지원
② 전시디자인 설치, 해체	한국관 장치 디자인 및 공사 비용 지원
③ 전시품 운송, 통관비	업체당 최대 1CBM, 해상편도비용 편도 100% 지원 (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)
④ 통역비, 네트워킹 만찬비	박람회 기간동안 1업체당 1인 현지어 통역, 사전점검 당일 네트워킹 석식 1회 제공
⑤ 바이어 매칭 상담 지원	바이어 사전 매칭, 상담 지원
⑥ 홍보비	한국관 홍보 디렉토리 제작 지원

\* ①②⑥ 산출금액의 70%에 한하여 국고 지원 (참여기업 30% 자부담),

③④⑤ 산출금액 100% 지원(운송, 통관비는 편도),

\*\* 단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

①②⑥ 산출금액의 50%에 한하여 국고 지원 (참여기업 50% 자부담), ③④⑤는 동일

\*\*\* KOTRA 해외박람회 지원 지침 내 기준 준용

#### 【별첨 4】 별칙 및 의무사항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종합박람회 및 개별박람회 사업 참여 제한
  1.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경우
  2.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허위 보고한 경우
  3.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
- ③ 박람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업체가 박람회 참가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박람회 참가신청부터 다음 각 호의 패널티 및 감점 부여 가능
  1. 종합박람회 : 사전설명회 후 참가 포기, 박람회 불참 시 당해연도 잔여박람회 참가를 취소하고 참가비를 환급하지 않으며 차년도 박람회 참여를 제한
  2. 개별박람회 : 사업선정 후 참가포기 시 차년도 개별박람회 및 종합박람회 참여 제한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유 발생 시 다음 차년도 박람회 사업참여 제한
  1. 박람회 현장에서 불성실한 부스 운영 및 박람회 운영요원의 정당한 현장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  2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련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
  3.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, 박람회 주최사, 장치 등 박람회 관련 업체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용납부에 응하지 않은 경우
  4.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전시품 운송에 협조하지 않는 등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